

00시·도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비영리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및 그에 준하는 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영역으로서 00시·도(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음식물을 말한다.

4.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시·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OO시·도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의 구청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5.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생산 방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마련
 3.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 ③ 제4조의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은 제22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시설 등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기관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장 및 OO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

제5조(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4. 제22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6.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등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 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관 등의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방법

②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22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한 식재료
2. 지역농산물
3. 시 이외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

④ 제3항에 따라 수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공급에서 제외한다.

제7조(기관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시장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 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제8조(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등의 공공급식에의 원활한 식재료 수급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 등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5. 학교 등의 공공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학교 등의 건강한 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등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 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 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기준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교육지원청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등 급식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13조(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16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다른 학교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00시·도의회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지역농산물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제1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00시·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인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에 관한 업무

4. 우수 식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급식재료 기획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업무

7.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업무

8.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협의 업무

9.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27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00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지도·감독 등

제28조(지도·감독)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의 장이 제7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00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